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573호 2023. 4. 14.(금)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792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고성군 조례 제2793호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
고성군 조례 제2794호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7
고성군 조례 제2795호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11
고성군 조례 제2796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회람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4월 14일

고성군조례 제2792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고성군”을 “고성군”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조언·권고·건의·제안 등을 할 수 있다”를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① 고성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을 “(위원의 자문 배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척은”을 “위원의 자문 배제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고성군 정책기획 담당부서의 장”으로, “기획담당”을 “그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4월 14일

고성군조례 제2793호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고성군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고성군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2. “공정관광사업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체험관광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등 공정관광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에 대해 군민이 충분히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적인 관광자원 정보 공유, 군민과 공정관광사업체와의 이해 상충 중재 및 군민의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해 다른 조례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주도 공정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방안
6. 공정관광 홍보·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8.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사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관내 공정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7. 공정관광 교육, 홍보 · 마케팅
8. 공정관광 국내 · 외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나 사업

제7조(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이 공정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정관광주민협의체는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정관광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공정관광사업협의체) ① 군수는 전국 단위 및 관내 공정관광사업체로 구성된 공정관광사업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정관광사업협의체는 고성군 공정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과 각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공정관광사업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정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정관광사업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고성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지역대표 관광조직을 말한다. 이하 “고성관광추진조직”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관광추진조직이나 공정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4월 14일

고성군조례 제2794호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5조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군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6조(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7조(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교통, 환경, 산림, 에너지, 건축, 농·수·축산업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3.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2.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 · 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3.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5조 기본계획 및 제6조 적응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4월 14일

고성군조례 제2795호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4월 14일

고성군조례 제2796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

다. 삭제

라. 삭제

제4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을 “공모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주택단지”로, “없다”를 “없다.(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시설설치”를 “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공공시설”을 “공용시설물”로 한다.

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신설 · 유지보수

9.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

10.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지원단지 선정 · 심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비의무관리 대상 및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군수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내용 및 적합 여부를 현지조사 해야 한다.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③ 군수가 현지조사하여 사업량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3조제2호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15조 중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1] <개정>

공동주택 지원 기준(제4조제3항 관련)

세대수	지원비율(퍼센트)	지원상한액
150세대 이상	사업비의 50이하	5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4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3천만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2천만원
30세대 미만	사업비의 80	1천만원

※ 지원 비율에 의한 지원 금액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상한액까지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2] <신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제11조제1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 (20)	■ 준공 후 30년 이상 ■ 준공 후 25년 이상 ~ 30년 미만 ■ 준공 후 20년 이상 ~ 25년 미만 ■ 준공 후 15년 이상 ~ 2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 16 12 8 4		사용승인일 ~ 신청일
	공동주택 규모 (10)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
	세대 수 (10)	■ 3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10 8 6 4 2		-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 최초지원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3년 미만	10 8 6 4 2 0		국·도·군 보조금 포함 마지막 지원 받은 날 ~ 사업신청일
	보조금 지원 횟수(20)	■ 최초 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이상	20 14 7		군 보조금 지원 사업
정성평가 (부서평가) 30점	긴급성 (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
	효과성 (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
	필요성 (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
가점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20		-
		■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된 단지(서류 미비 제외)	+5		-
		■ 보조금 지원 중점 지원항목 대상	+5		군 조례 제5조
감점		■ 1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10년간 보조금 부정수령 등 지원사업 부실 사례	-10		-